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9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4
2. 제정안의 체계	7
3. 총괄 검토의견	8
V. 주요 항목별 검토	10
1. 제1장 총칙	10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3
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제5조)	16
2.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19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19
나. 실태조사 및 보안대책(제8조·제9조)	22
다.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안 제10조·제11조·제12조)	24
3.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	26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보유, 등록 및 공개, 활용(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26
나.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선도기관,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6
4. 제4장 보칙	30
가. 분쟁조정, 업무의 위탁, 면책(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0
5. 부칙	33
가. 시행일(안 부칙)	3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4.

다. 회 부 일 : 2024. 7. 5.

II. 제안이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3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활용이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 중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안 제1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저장소의 설치·운영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저장소 설치·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4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안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하여 공개하되,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안 제16조)

국가연구데이터는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7조)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아. 선도기관(안 제18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9조)

바이오, 소재 등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해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차. 분쟁조정(안 제20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²⁾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³⁾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3) 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수행 중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운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DataON 구축·운영예산	4,692	3,514	3,793	4,948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로는
법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⁴⁾

이에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
로써 법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활용 가치를 높여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요 국가(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
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

구분	계획명	정책유형 (상,하향식)	주관기관	시행 기간	특징
미국	공공액세스 정책 (Memorandum)	행정명령 (하향식)	대통령 직속 OSTP	2013~	○ 연방정부 지원기관사업의 데이 터관리계획(DMP) 도입
영국	연구데이터 정책 공동원칙	권고지침 (상향식)	영국연구회(UKRI) 와 유관기관	2015~	○ 공공연구데이터의 접근 제한 최소화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유럽 연합	Horizon 200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사업규정 (하향식)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2014~ 2020	○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ORDP) 시행 및 데이터관리계 획 도입

4) 출연연·과기원 연구데이터 관리 실태 관련 정필모의원실 보도자료(2023.10.2.)에 따르면, R&D 연구데이터저장소인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유일했고, 25개 출연연 중 17개임. 또한, 다수 기관이 리포지터리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에 연계한 곳은 더욱 적었는데, 5개의 출연연(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가오픈사이언스 계획	행정제도 (하향식)	총리 직속 디지털담당정부 차관	2014~	○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 공공자금 50%이상 투입 연구 데이터의 개방 권고 ○ 공익 관련 민간데이터 개방 권고
네덜란드	국가오픈사이언스 계획	민관합동 전략 (상향식)	NWO 등 개별연구기관	2017~ 2028	○ 2020년까지 오픈사이언스 로드맵 채택 ○ 2028년까지 오픈사이언스 지표 채택
호주	연구데이터 호주(RDA) 계획	정책 (상향식)	교육부 NCRIS 담당	2012~	○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 검색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 및 교육·훈련 제공

자료: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 제도 개선방향, 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제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시행계획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제1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제12조 국제협력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 의 관리·활용	제13조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제14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제15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제16조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제17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제18조 선도기관
	제19조 분야별 전문센터
제4장 보칙	제20조 분쟁조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면책

3.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하여 정의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국가연구데이터 등록·공개”, “국가연구데이터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여 연구데이터 공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연구개발성과로서의 연구데이터의 생산·활용가치를 제고하려는 제정법 마련을 내용으로 함.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가 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연구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이라는 규율 형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임.

둘째, 동 제정안은 연구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공유 원칙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 산업 정책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분야 연

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전반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⁵⁾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제도 중 제정안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령, 안 제6조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나 제7조의 “시행계획”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거나, 제20조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특별 분과로 연구데이터에 관한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셋째, 2024년 8월 12일 기준 제정안뿐만 아니라 동일 제명의 제정안 1건⁶⁾과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5건⁷⁾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안들을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의안번호 220139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7) [의안번호 220129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국가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으로 당해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서 기능함.⁸⁾

안 제1조에서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함”을 입법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은 상법상의 회사나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고 일부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입법 목적이 연구성과물의 자산화 촉진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환경 조성”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조제3호 “국가연구데이터” 정의에서의 데이터를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데이터”와 다르게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연구데이터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⁹⁾에서는 “데이

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39.

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터”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조제3호의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데이터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있음.

셋째, 안 제2조제3호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에서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제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배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서 국가연구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조제4호에서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연구개발기관¹⁰⁾ 중 기관 성격상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기관에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일부 연구개발기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라면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연구개발기관을 나열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안 제14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관리·활용 등의 주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까지 책무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2.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7조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선도기관, 전문분야별 전문센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 중이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전문기관¹¹⁾을 지정·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연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구개발사업로부터 발생한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¹²⁾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도 연계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제정안은 국가연구데이터를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안 제14조)과 필요시 비용 부과(안 제16조)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산업에 관한 계획과도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실태조사 및 보안대책(제8조·제9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8조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하여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조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제8조의 실태조사의 요건인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같은 조 제2항에서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태조사 요청에 순응해야 하므로 실태조사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둘째, “국가연구데이터”는 “데이터”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안 제10조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13)의 실태조사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실태조사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로도 안 제10조의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 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임.

특히, 실태조사는 자료 요청에 따르는 의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에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 취지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안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15조에서의 국가연구데이터의 적극 공개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을 국가정보원장과 합동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보안대책¹⁴⁾을 염두해둔 조항으로 보임.

그렇다면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데이터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로부터 도출된 국가연구데이터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국가연구데이터의 적극 공개 원칙과 상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안 제10조·제11조·제1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 및 활용 관련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연구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2.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3.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등 현황 파악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단체 등과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정보 교환 방안 2. 국가연구데이터의 국제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공동사업 등의 지원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지원 5.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검토의견

안 제12조의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은 그 필요성이나 현실 가능성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 각 호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1호의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정보 교환 방안과 제4호의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성이 있는지, 제3호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현실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보유, 등록 및 공개, 활용(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보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생성한 국가연구데이터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소는 제17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제2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을 제17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거나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된 데이터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가 무료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③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5조제3항에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연구데이터”의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고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선도기관,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선도기관 및 분야별 전문센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국가연구데이터를 분야, 유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4.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② 선도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보존·폐기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련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를 점검·공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선도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도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선도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야별 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해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야별 전문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등록·보존·제공·폐기에 관한 사항

2.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5.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분석도구 등의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 전문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야별 전문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5항의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그 밖에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8조의 “선도기관”과 제19조의 “분야별 전문센터”의 구체적인 역할 및 업무 구별이 불명확하여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 기관 모두 국가데이터의 수집·등록·폐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품질관리,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할 정도로 구체적인 구별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8조제2항제5호의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련 전담부서”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전담부서라는 개념은 제5호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고 그 이후에도 전담부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셋째, 안 제18조제2항제2호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¹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8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제4장 보칙

가. 분쟁조정, 업무의 위탁, 면책(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0조는 국가연구데이터 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0조(분쟁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면책)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에 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

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이를 활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0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여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¹⁶⁾로 제3자는 별도의 조정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장관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¹⁷⁾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16)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p.580, 2019

1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임이 아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2조제2항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
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칙

가. 시행일(안 부칙)

1) 제정안의 내용

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동 제정안은 하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기관에 의해 “국가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적용례 부칙을 통해 현재 수립 중인 국가연구데이터관리계획과 동 제정안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9